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연월일 | 2023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지 방 세 기 본 법 시 행 령  
일 부 개 정 령 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행정안전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3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2024년 1월 1일부터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가산금이 통합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정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가.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규정(안 제34조)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적용되는 이자율을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이자율(0.022%)에 30을 곱한 이자율로 정함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 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##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에 30을 곱한 이자율을 말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4조(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)<br>(생략)<br>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34조(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)<br>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br>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<br>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<br>이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에 30<br>을 곱한 이자율을 말한다. |

## 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연락처          | (044) 205 - 3810 |